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2024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77305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202440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병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정남

변론종결 2023. 3. 21.

판결선고 2023. 4. 18.

주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8. 11. 7. 접수 제9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7. 5.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7. 10. 10.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은 2018. 9. 12.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9. 11. 1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40732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5. 19. ‘피고는 원고에게 18,701,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라. F은 피고와 사이에 G, H, C, I을 자녀로 두었다. F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8. 6. 6. G, H, C, I과 망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1.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인 2/1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J은행에 대한 대출금 50,000,000원 및 4,605,000원의 채무, K카드에 대한 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L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도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8. 11. 7. 접수 제9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고, C은 인천에서 살고 있어 C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